

2015년 10월 17일 시행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B책형)

KG Passone / 7급, 9급 행정학 전임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5. 10. 22(목). 14:00~15:00 해설특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KG Passone / 7급·9급 행정학 전임교수 행정학 박사 김만식입니다.

이번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급 “지방자치론” 시험으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출제
2. 지방자치론 과목을 ‘출제경향’에 맞게 학습한 수험생은 합격점수인 90점을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는 난도가 적절한 수준의 문제
3. 지난 2014년 출제문제와 난도가 유사
4. 20문항 모두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만 출제
5. ‘이론과 법령’ 분포(총 20문항) : ‘지방자치이론 2문항’,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법령 18문항’

2015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한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시험문제 출제수준은 2016년에 실시되는 7급 지방직 시험에서도 비슷한 출제수준과 출제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6년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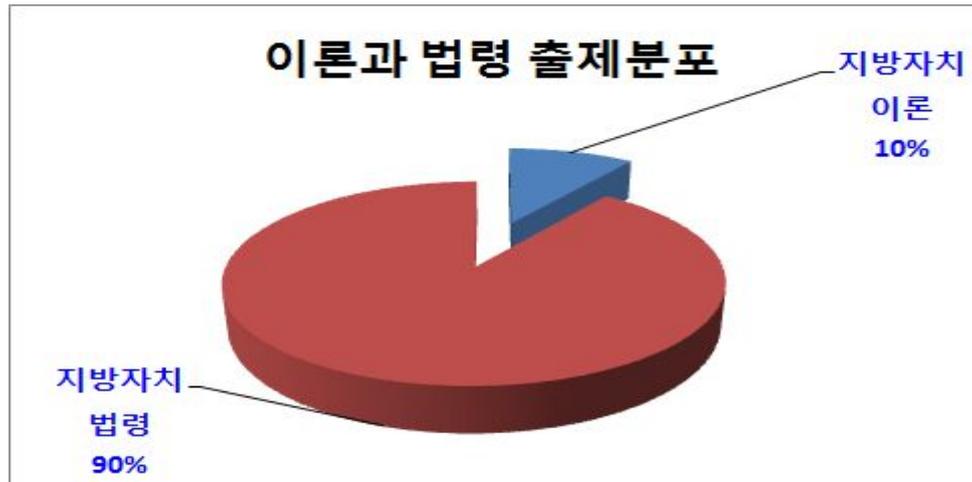
2015. 10. 17. 인사혁신처 시행 7급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출제문제 분석 (B책형)

1. 지방자치 이론과 지방자치 법령(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 (1) 지방자치 이론(2문항 10점 - 1번, 2번)
- (2) 한국의 지방자치 현행 법령(18문항 90점)

- 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서**
- 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2. 분야별 출제내용

- (문 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
- (문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 (문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 (문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
- (문 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문 7) 「지방자치법」 상 시(市)·읍(邑)의 설치기준
- (문 8) 「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
- (문 9) 지방세 중 도(道)세의 종류
- (문10) 조례와 규칙의 제정 과정
- (문11)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문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
- (문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
- (문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
- (문15)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문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 (문17)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
- (문18)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 (문19)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 (문20) 우리나라의 행정협의회

문 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소집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57-1161.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57-1161쪽.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사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문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43.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43 쪽.

정답▶ ① [해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문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소방기관
- ② 출장소
- ③ 부지사
- ④ 사업소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63.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63쪽.

정답▶③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48-1149.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48-1149 쪽.

정답▶②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시·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문 7. 「지방자치법」상 시(市)·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市)·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④ 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邑)으로 할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22-1123.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22-1123쪽.

정답▶②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8.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60-1161.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60-1161 쪽.

- 정답▶ ①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문 11.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98.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98 쪽.

- 정답▶ ④ [해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2015.5.13., 일부개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64.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64 쪽.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문 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867.

★ 2015년 5월 한국의 행정법령특강 제 4 회 주제 39. 자료 111 쪽.

정답▶③ [해설] 공직자윤리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문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62-1163.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62-1163 쪽.

정답▶②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관 지방의회의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문 15.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으로 정한다.

- ㉠ ㉡
- ① 법률 대통령령
- ② 법률 규칙
- ③ 조례 대통령령
- ④ 조례 규칙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21.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21 쪽.

정답▶①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73-1179.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73-1179 쪽.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급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문 17.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29-1130.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29-1130 쪽.

정답 ▶ ② [해설] 지방공기업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3장 지방공사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문 18.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65.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65 쪽.

정답 ▶ ③

[해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5.6.22.] [2015.6.22., 일부개정]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둔다.

[법률 제10046호(2010.2.26.)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위원회”가 “해당 시·도 의회의 **조례**”로 정하는(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고, 현재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현재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법률상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감’도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8.4.] [2015.2.3., 타법개정]

제10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제81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문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③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77.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77 쪽.

정답▶ ① [해설] 주민투표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7급/9급(통합) Point 행정학 교재 p. 1146.

★ 2015년 5월 지방자치론 특강 자료 1146 쪽.

정답▶ ① [해설]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2014.6.3.,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Point 행정학**